

치과장애인 환자를 위한 전신마취

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마취과

서 광 석

치과외래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치과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만날 수 있다. 예를 들어 진정요법 또는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는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 데, 이러한 환자를 협의의 치과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다.

예를 들면 정신지체, 자폐증 등으로 치과치료에 협조가 안 되는 환자, 뇌성마비, 경련성질환 등으로 불수의적 운동에 의해 치과 치료가 어려운 환자, 치과에 대한 공포가 심하여 치료가 불가능 한 소아 등을 들 수 있는데, 그 이외에도 구역반사가 너무 심한 환자, 극도의 치과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, 국소마취제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등도 치과적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다.

정신적 장애 환자는 치과치료에 대한 극심한 공포심을 보일 수 있고, 파괴적인 행동을 보여 구강검진 자체도 용이 하지 않으며 구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구강 질환의 진행상태도 심한 편이다. 이런 환자의 치과치료 시 전신마취를 시행함으로써 구강검진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여러 번 치료의 고통 없이 한번에 모든 치료를 완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. 또한 환자와 치과의사의 치료적 관계 형성이 용이하며 양질의 진료가 가능하고 술자 및 환자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

통상적으로 치과치료를 위한 전신마취는 외래마취를 하게 되는 데, 입원에 의한 정신적인 나쁜 영향을 피할 수 있고, 병원 감염 등을 피할 수 있고,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.

하지만 장애인 환자는 선천성 기형, 호흡기 질환, 유전성 질환 등 의학적으로 심각한 전신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으나, 치료 전 과거력 및 이학적 검사 힘들고, 전신마취를 위한 정맥로 확보의 곤란, 마취시작 전 환자감시 장치 부착의 어려움, 기도 확보의 곤란, 약물 상호 작용 등 일반적인 전신마취에 비해 어려운 점도 많이 가지게 된다